

부동산등기관제

[2003년 6월 등기선례]

[1] 호적부 등에 부(夫)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(소극)

1.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호주갑이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 '을'과 모 '병'을 남기고 1950. 6. 25. 전사한 것으로 1961. 8. 29. 기재되어 있고, 처 '을'이 6·25사변 중 군인으로서 생사불명이 된 피상속인 갑과 1952. 10. 15.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, 모 '병'이 1953. 3. 23. 사망하고 처 '을'이 1990. 7. 24. 호주상속한 경우라도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이후에 혼인신고된 처 '을'을 상속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2. 이미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, 사망한 갑이 신고인으로 된 모 '을' 및 갑의 전처 '정'에 대한 사망신고, '을'을 호주로 한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호적의 기재(편제)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을 정정한 다음,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사망한 갑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에서 확인을 얻어 혼인신고 및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(병호적을 먼저 편제한 후 을호적 편제), '을'을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(2003. 5. 31. 부등 3402-294 질의회답)

➡ 참조조문 :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, 호적법 제120조, 제121조

참조선례 : 등기선례요지집 III 제422항, 호적선례요지집 III 제593항

[2]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신탁원부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자

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고, 그 서면에서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,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때에는 신탁원부의 표지에 대리인만이 기명날인을 하여도 무방하다.

(2003. 6. 2. 부등 3402-295 질의회답)

(2003. 6. 2 부등 3402-295 질의회답)

➡ 참조조문 : 부동산등기법 제123조, 제124조

부동산등기시행규칙 제67조

[3] 환지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환지등기의 재촉탁 여부 등

1. 환지계획이 인가된 환지 토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환지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(금전청산으로 환지지정이 없는 경우 포함)에는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촉탁을 할 수 있다.
2. 종전토지의 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되는 증환지를 하는 경우에도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증환지지정신청(동의)서를 환지등기촉탁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.
3.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등록